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4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문금주 · 이재관 · 박민규
이재정 · 박지원 · 장종태
김원이 · 문대림 · 정진욱
조인철 · 이재강 · 송재봉
김 윤 · 임미애 · 이병진
박용갑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

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 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u> <u>⑥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림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5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 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u>

<u>⑤</u> (생략)	<u>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u>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	---